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과세번호 |     |
| 담당자  | 문의처 |

바코드 17mm  
우편반송용

우체국

바코드 13mm  
음성변환용(외부)

받는 사람

납부장소
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바코드 13mm  
음성변환용(내부)

지방세 안내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
※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

시·군·구

수납은행  
(확인용)

납세자:  

| 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|
| 기관번호  | 세목   |
| 납세연월기 | 과세번호 |

전자납부  
번호

|       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|
| 세목     | 납부할 세액 |
|        |        |
|        |        |
|        |        |
| 납부할 금액 |        |

수납은행용  
바코드

지방자치  
단체의 장

직인

수납용

시·군·구

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  
(납세자용)

|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|    |   |    |     |      |   |
|------|------|---|----|----|----|----|---|----|-----|------|---|
| 납세번호 | 과세기관 | 검 | 회계 | 과목 | 세목 | 연도 | 월 | 구분 | 읍면동 | 과세번호 | 검 |
|------|------|---|----|----|----|----|---|----|-----|------|---|

납세자:  
주소

과세대상

수납용 바코드  
수납용

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|
| 세목     | 지방세<br>(가산세 포함) | 가산금 | 합계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|
| 납부할 금액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|

납부할 금액이 공란이면 뒤쪽의 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  
하시기 바랍니다.  
발행일   년   월   일   수납일   년   월   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수납인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
있습니다.

전자납부  
번호

납부기한  
까지

담당자  
문의처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 (80g/㎡)]

## 안 내 말 씀

-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 -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75%(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.2%)의 증가산금이 가산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    - 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-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
    - 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고지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금고, 전국 은행,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, 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     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(     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농어촌특별세액이 (     )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(     )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-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,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일자별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◎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 
[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납부할 금액]

| 일자 | 농어촌특별세   |    | 납부할 금액 |
|----|----------|----|--------|
|    | 가산세(체납분) | 합계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
| 일자 | 농어촌특별세   |    | 납부할 금액 |
|----|----------|----|--------|
|    | 가산세(체납분) | 합계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|    |          |    |        |

- ◎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

-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% 가산금이 부과되고, 이후에는 1개월마다 0.75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
6.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·ARS·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([www.wetax.go.kr](http://www.wetax.go.kr) 또는 위택스 앱)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.

## 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- ◎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 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지방세납부 등] 선택(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)
- ◎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- ◎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지방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- ◎ 위택스([www.wetax.go.kr](http://www.wetax.go.kr) 또는 위택스 앱)나 인터넷지로([www.giro.or.kr](http://www.giro.or.kr))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(07:00 ~ 23:30)

지방세납부 →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→ 공동인증서 확인 →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,  
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→ 납부하기 →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→ 납부확인 → 지방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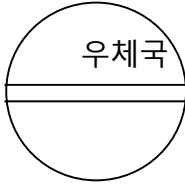
※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, 카드로택스([www.cardrotax.or.kr](http://www.cardrotax.or.kr)), 은행CD/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
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

◎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.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

음성변환용(외부)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과세번호 |     |
| 담당자  | 문의처 |

받는 사람



우편반송용

## 지 방 세

###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납세자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번호 |  |
| 총 체납건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체납액 |  |
| 안내사항   | ※ 월 일 현재 체납자료이며, 농어촌특별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      |  |

| 연<br>번 | 세<br>목 | 과세연월 | 과세대상   |                 |     | 전자납부번호 |
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       |        |      | 납부할 세액 | 지방세<br>(가산세 포함) | 가산금 |        |
| 1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2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3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4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5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6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7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8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9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| 10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



음성변환용(내부)

월 일 현재 귀하의 총 체납액이 원이므로,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※ 지방세 납부할 금액 및  
납부방법은 뒤쪽 참조

납부일자 별 납부할 금액 안내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납세자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번호 |  |
| 총 체납건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체납액 |  |
| 참고     | ※ 농어촌특별세는 체납기간 동안 ( )마다 ( )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. |       |  |

[illegible]

##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

\* 지방자치단체 활용란